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20
------	-----

2022. 11. 01.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22년 10월 21일
-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22.11.01.)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정수용 기획조정실장)

1. 제안이유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개정(2022.4.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방체험관’을 직속기관으로 편제·신설,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명칭주소 반영과 소방서의 도로명 주소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통령실 이전으로 ‘청와대소방대’ 명칭을 ‘대통령경호처소방대’로 변경 및 소방활동 범위를 구조·구급 분야까지 확대하여 사무범위·내용 명확화(안 제44조, 제46조)
- ‘서울특별시 소방체험관’을 직속기관으로 편제·신설(안 제50조, 제51조, 제52조)
- 종로소방서 및 금천소방서의 도로명 주소 정비(안 별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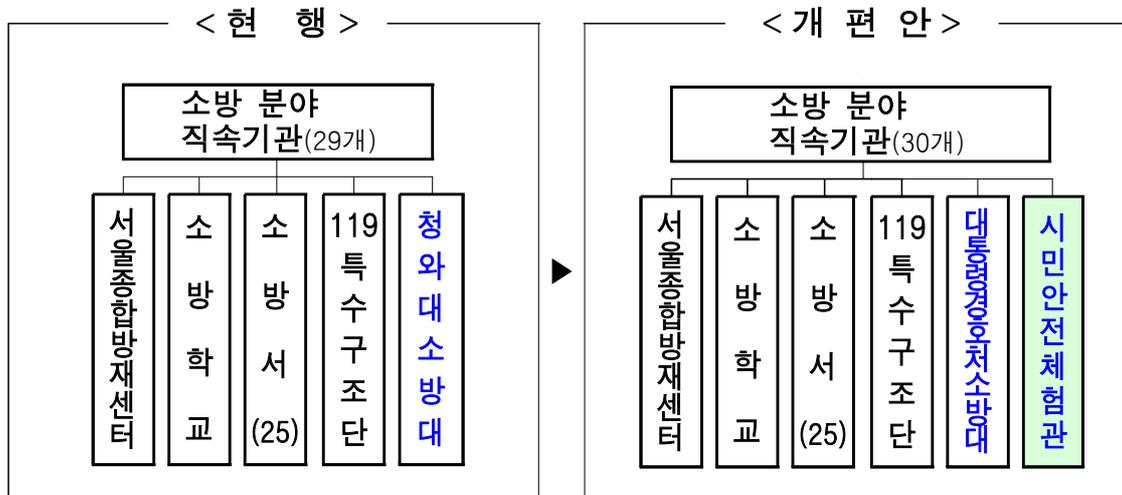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청와대소방대의 명칭을 변경하고 소방활동 범위를 구조·구급까지 확대하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개정(22.4.15.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방체험관을 직속기관으로 편제·신설하고자 제출됨.

나. 소방분야 직속기관 개편

- 현행 ‘청와대소방대’를 ‘대통령경호처소방대’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민안전체험관’을 신설해 소방분야의 직속기관은 29개에서 30개로 개편됨.



(1) 청와대소방대 명칭 변경 및 소방활동 범위 확대(안 제44조, 제46조)

- 청와대소방대는 2003년부터 서울시 직속기관으로 편제·운영되었으며, 화재·구조·구급·외부행사 안전점검 등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및 주변지역 소방활동 전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해 옴.
- 그러나 대통령집무실의 용산 이전(2022.5)에 따라 개정안은 ‘청와대소방대’의 명칭을 ‘대통령경호처소방대’로 변경하고 사무범위를 대통령 집무실(국방부), 관저(한남동) 및 주변 지역으로 확대·변경함.
 - 근무 인원은 기존 30명에서 소방분야 정원 내 인력 재배치를 통해 45명으로 늘어남.
- 또한 소방활동 범위를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에서 구조·구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사무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함.

< 청와대소방대 개정사항 >

구 분	당 초	개 정
기구명칭	청와대소방대	대통령경호처소방대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세종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용산동3가)
사무범위	청와대 안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대통령집무실, 관저 및 주변지역에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및 구조·구급

- 관할구역이 단일 구역으로 집적되어 있던 청와대(25만㎡)와 달리 용산 대통령실은 대통령 집무실(37만㎡)과 한남동 관저(15만㎡)로 분리·확대된 만큼, 집중적인 소방활동과 차질 없는 소방 대응을 위해서는 신속한 조례 현행화가 필요함.

(2) 시민안전체험관 직속기관 신설(안 제50조, 제51조, 제52조)

- 「소방기본법」 제5조¹⁾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9조²⁾는 시·도지사가 소방체험관 운영과 체험형 안전교육 실시를 위한 안전체험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최근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³⁾의 개정('22.4.15.시행)으로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위기대처 능력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1) 「소방기본법」 제5조(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①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장은 소방박물관을, 시·도지사는 소방체험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9조(안전체험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안전체험관을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3)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장(소방체험관) 제14조(설치 등) ① 시·도는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주민의 위기 대처능력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체험관을 설치할 수 있다.

조례로 직속기관인 소방체험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됨.

- 서울시는 현재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내 하부조직으로 보라매·광나루 안전체험센터를 각각 운영 중이며, 소방안전 및 선박·풍수해·지진 등의 상황에 대비한 다양한 체험시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권역별 안전체험관 건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청년혁신파크(동북권), 문화비축기지(서북권) 내 안전체험관 조성을 계획하고 있음.

< 서울시 안전체험센터 운영현황 >

구 분	광나루안전체험센터	보라매안전체험센터
위 치	광진구 능동로 238	동작구 여의대방로 20나길 16
개 관 일	2003. 3. 6.	2010. 5. 25.
규 모	3/1층 연면적 5,444㎡(대지 5,041㎡)	3/1층 연면적 8,020㎡(대지 4,753㎡)
사 업 비	20,549백만원	41,452백만원
주요시설	선박, 풍수해, 화재 등 20종	지진, 지하철, 전문 응급처치 등 20종
운영실적	총 3,125,852명 방문(2022.7.기준) *일일 평균 565명, 월 평균 13,798명	총 1,635,295명 방문(2022.7.기준) *일일 평균 476명, 월 평균 11,557명

- 법령과 조례를 통해 시민안전체험관이 직속기관으로 상향 규정되는 만큼 소방안전교육에 대한 책임성 강화와 함께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의식과 위기대처 능력 제고 등의 입법 효과가 기대됨.

다. 종로소방서·금천소방서 도로명 주소 정비(안 별표1)

- 종로소방서는 청사의 노후화를 해소하기 위한 재건축을 위해 임시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주소를 변경하고, 금천소방서는 기존의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정비함.

< [별표1] 종로소방서·금천소방서 주소 정비 >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내 용
종로소방서	종로구 <u>종로1길 28(수송동)</u>	종로구 <u>올곡로 78(운니동)</u>	임시청사 이전
금천소방서	금천구 <u>독산동 1054-8번지</u>	금천구 <u>시흥대로 342(독산동)</u>	지번주소 정비

- 기존 종로소방서 청사는 소방합동청사 건립(2025.10. 준공예정)으로 소방재난본부, 종합방재센터와 함께 배치될 예정임.
- 개정안은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소방서 위치에 대한 시민의 혼선을 방지하고 도로명 주소로 통일하여 정비하는 타당한 입법 조치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요지

가. 수정이유

- 정책지원관의 신속한 추가 도입을 위해 함께 제출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칙의 조례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부칙을 변경함.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조례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수정함(부칙).

Ⅵ.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20
----------	--------

제안년월일 : 2022년 11월 1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정책지원관의 신속한 추가 도입을 위해 함께 제출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칙의 조례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부칙을 변경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조례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함(부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이 조례는 <u>2022년 8월 19일</u>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u>2023년 1월 1일</u>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 제8절의 제목 “서울특별시청와대소방대”를 “서울특별시대통령경호처소방대”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청와대 안에서 화재의 예방·경계 및 진압”을 “대통령 집무실, 관저 및 주변지역에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및 구조·구급”으로, “서울특별시청와대소방대”를 “서울특별시대통령경호처소방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종로구 청와대로 1(세종로)”을 “용산구 이태원로22 (용산동3가)”로 한다.

제46조제1호 중 “청와대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 집무실, 관저 및 주변지역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및 구조·구급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3장에 제10절(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절 서울특별시시민안전체험관

제50조(설치)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시민안전체험관 (이하 이 절에서 “안전체험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안전체험관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0나길 16(신대방동 722)에 둔다.

제51조(관장) 안전체험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2조(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안전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안전체험관 교육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제50조부터 제130조까지를 제53조부터 제133조까지로 한다.

별표 1의 종로소방서의 위치란 중 “종로1길 28(수송동)”을 “율곡로 78(운니동)”으로 하고, 금천소방서의 위치란 중 “독산동 1054-8번지”를 “시흥대로 342(독산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절 <u>서울특별시청와대소방대</u></p> <p>제44조(설치) ① 법 제126조에 따라 <u>청와대 안에서 화재의 예방·경계 및 진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청와대소방대(이하 이 절에서 "소방대"라 한다)를 설치한다.</u></p> <p>② 소방대는 서울특별시 <u>종로구 청와대로 1(세종로)에 둔다</u></p> <p>제46조(소관사무) 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p>1. <u>청와대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에 관한 사항</u></p> <p>2. (생략)</p> <p>제3장 직속기관</p> <p style="text-align: center;">< 신 설 ></p> <p style="text-align: center;">< 신 설 ></p>	<p>제8절 <u>서울특별시대통령경호처소방대</u></p> <p>제44조(설치) ① ----- <u>대통령 집무실, 관저 및 주변지역에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및 구조·구급-----</u> -----<u>서울특별시대통령경호처 소방대(이하 이 절에서 "소방대"라 한다)를 설치한다.</u></p> <p>② -----<u>용산구 이태원로22 (용산동3가)-----</u></p> <p>제46조(소관사무) ----- -----</p> <p>1. <u>대통령 집무실, 관저 및 주변지역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및 구조·구급에 관한 사항</u></p> <p>2. (생략)</p> <p>제3장 직속기관</p> <p>제10절 <u>서울특별시시민안전체험관</u></p> <p>제50조(설치)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u>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시민안전체험관(이하 이 절에서 "안전체험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u></p>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② 안전체험관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0나길 16(신대방동 722)에 둔다.																								
< 신 설 >	제51조(관장) 안전체험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신 설 >	제52조(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신 설 >	1. 안전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안전체험관 교육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제50조 ~ 제130조(생략)	제53조 ~ 제133조 (현행 제50조부터 제130조까지와 같음)																								
[별표1]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37조제2항 관련)	[별표1]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37조제2항 관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명칭</th> <th style="width: 45%;">위치</th> <th style="width: 40%;">관할구역</th> </tr> </thead> <tbody> <tr> <td>종로소방서</td> <td>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수송동)</td> <td>종로구 일원</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 </tr> <tr> <td>금천소방서</td> <td>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54-8번지</td> <td>금천구 일원</td> </tr> </tbody> </table>	명칭	위치	관할구역	종로소방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수송동)	종로구 일원	(생략)			금천소방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54-8번지	금천구 일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명칭</th> <th style="width: 45%;">위치</th> <th style="width: 40%;">관할구역</th> </tr> </thead> <tbody> <tr> <td>종로소방서</td> <td>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8(운니동)</td> <td>종로구 일원</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r> <tr> <td>금천소방서</td> <td>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42(독산동)</td> <td>금천구 일원</td> </tr> </tbody> </table>	명칭	위치	관할구역	종로소방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8(운니동)	종로구 일원	(현행과 같음)			금천소방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42(독산동)	금천구 일원
명칭	위치	관할구역																							
종로소방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수송동)	종로구 일원																							
(생략)																									
금천소방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54-8번지	금천구 일원																							
명칭	위치	관할구역																							
종로소방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8(운니동)	종로구 일원																							
(현행과 같음)																									
금천소방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42(독산동)	금천구 일원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